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18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김영진·인재근·최종윤

이원욱 · 강득구 · 김윤덕

허 영·장경태·김수흥

조응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이행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해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선인원의 증원,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명령 근거를 신설함.

- 나.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6조의2 신설)
 - 1)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설되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선임요건을 개 정함(안 제46조의2제1항 신설).
 - 2)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선임상 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해임이나 퇴직시에는 그 이전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선임·해임은 물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퇴직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3)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할 총괄적 책임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이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및 지도·감독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6조의3 신설)
 - 1)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를 명확하 게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규정 함(안 제4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6항 신설).
 -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 3)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 중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거나「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선박소유자가이러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대행업자 소속인경우 대행업자 포함)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 4)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함께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46조의3제5항 신설).
 - 5)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업무이행명령을 하거나, 선박소유자(위탁받은 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정함(안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안전관리체제 인증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제48조제 7항 신설)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대행기관에 대해 현행법은 지정취소나 업무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해소나 공익차원에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 하되.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마.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도입(안 제5장제3절 신설)
 - 1)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안전관리사의 업무범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자격시험의 면제사유, 부정응시에 대한 처리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신설).
 - 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취소시의 청문조항을 신설함(안 제61조의3제3항 및 제98조제6호 신설).
 - 4)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자에게 자격 대여나 명의사용을 금지하고, 선박안전관리사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의4 신설).

- 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제고를 위하여 선박안 전관리사를 고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해 우선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5 신설).
- 바. 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근거 신설(안 제97조의4 신설)

선박안전관리사 업무의 개선·발전 및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선인원의 증원,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

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제 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 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선박소 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해임·퇴직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 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
 - 3.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의 분석
 - 4.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 확인
 - 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 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 6.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ㆍ기술정보 등의 제공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

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 그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수립·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

항에 따른 조치의무 및 신고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 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절(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 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관리·운영한다.

-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및 개선·지도
-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개선 및 지도·조언
-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 조언
-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 7. 선박안전·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 여·조언
-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 4. 제61조의3제3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 제61조의3(선박안전관리사의 자격부여 등) ①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61조의2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6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 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자격증의 발급 등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 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 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1조의4(자격취득자의 자격대여금지 등) ①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②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1조의5(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 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 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7조의4(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① 선박안전관리사 업무의 개선
 발전과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등 선박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박안전 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선박안전·보안관리·해상교통안전 업무수행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
- 2. 선박안전·보안관리·해상교통안전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후련
- 3.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4. 선박안전관리사의 경력 등의 확인
-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99조제3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법에"를 "이 법에"로,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

다.

제106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의3. 제4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4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자
- 3. 제4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4. 제46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4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변경선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0조제3항제17호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46조제5항에 따른"을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로, "두지"를 "선임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18의2.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6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 3. 제6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5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최초로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종전의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제6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 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에 대한 특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부칙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를 제4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햀 개 정 아 제45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① 누구든 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 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 여서는 아니 된다. 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선인원의 증원, 선박 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 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 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 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 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 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선 박-----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 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략)

- ⑤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 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u>4</u>
따라 안전관리대
<u>행업을 등록한 자</u>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u><삭 제></u>

<삭 제>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안전관 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 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 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 전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 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안전관리책임 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 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 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실

을 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 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 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해 임·퇴직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신 설>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 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
- 3.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의 분석
- 4.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 확인
- 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 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 6.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기술 정보 등의 제공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 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및 신고 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 ⑦ (생략)
- ⑧ (생략)
- ⑨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1호, 제3호</u>

- 1. ~ 6. (현행과 같음)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u><삭 제></u>

<신 설>

<u><신 설></u> <u><신 설></u> ①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
도의 관리·운영 등)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
전관리사 제도를 관리·운영한
다.

-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및 개선·지도
-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 개선 및 지도 · 조언
-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의점검 및 개선
-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조언

-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 7. 선박안전 · 보안기술의 연구 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 · 조언
-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 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 전법」, 「선박직원법」, 「선 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61조의3제3항에 따라 자격 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정지 중

<u><신</u>설>

에 있는 자

- 제61조의3(선박안전관리사의 자격 부여 등) ①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 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
 - ② 해양구산무상관은 무성안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을 취득한 경우
- 2. 제61조의2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6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대여하 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 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자격이 발급 등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자격취득자의 자격대여

<신 설>

<신 설>

<신 설>

금지 등) ①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대여하거 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제61조의5(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 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 6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7조의4(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① 선박안전관리사 업무의 개선・발전과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등선박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위하여 선박안전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

<u>다.</u>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u>④</u>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선박안전 · 보안관리 · 해상교 통안전 업무수행 관련 조사 및 연구 · 개발
- 2. 선박안전・보안관리・해상교

 통안전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3.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4. 선박안전관리사의 경력 등의 확인
-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제9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저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 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 략)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 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u>있다.</u>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u>다.</u>
세98조(청문)
1. ~ 5. (현행과 같음)
6.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o</u>]
법에
관련 전문기관 또
는 단체
데106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3. ~ 18. (생략)

제108조(벌칙) 제38조제1항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상이 -1146구 상이-114구 이 상기

12의3. 제46조의2제4항을 위반

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u>12의4.</u>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

하여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

<u>한 자</u>

13. ~ 18. (현행과 같음)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

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

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6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6. (생략)
- 17. <u>제46조제3항</u> 후단에 따른 통 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8. <u>제46조제5항에 따른</u> 안전관 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u>두</u>지 아니한 자

<신 설>

- 19. ~ 25. (생략)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5. 제4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변경선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ll11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16. (현행과 같음)
17. <u>제46조제4항</u>
18. <u>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u>
<u>을 위반하여선</u>
<u>임하지</u>
18의2.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
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 25. (현행과 같음)
④ 제45조제1항을
① <u>加切工加1 0 5</u>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 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 · 징수한다.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6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u>자</u>
3. 제6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
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u>자</u>
<u>⑥</u> <u>제5항</u>